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5년 11월 0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11월 1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 요약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11.06)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펀드 코드:46147)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시장상황별 적극적인 주식투자 및 상승예상 종목에 대한 집중투자로 주식가격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투자전략**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투자전략]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 상기 운용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KOSPI*100%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1,000 만원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60	0.90	1.42	1.6085	262	434	614	1,001	2,1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2.20	1.50	1.60	2.2069	226	464	713	1,250	2,8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45	0.75	1.18	1.4584	149	306	471	826	1,88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24.10.16~ 2025.10.15	2023.10.16~ 2025.10.15	2022.10.16~ 2025.10.15	2010.10.16~ 2025.10.15	
수료미징구-오프라인(C)	36.66	22.35	19.58	12.22	7.7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37.69	23.27	20.48	13.06	9.44
비교지수(%)	38.88	22.03	18.24	9.15	7.14
수익률변동성(%)	18.52	17.99	16.87	17.59	19.58

(주1) 비교지수 : KOSPI*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냅니다.

운용전문인력

***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2025.10.15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고재호	1978	책임 (상무)	18	1,551	39.84%	25.12%	39.84%	25.12%	14 년 3 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

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10.15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고재호	1978	책임 (상무)	18	1,551	39.84%	25.12%	39.84%	25.12%	14 년 3 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

<table>
<tr><td></td><td colspan="4">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5">주요투자위험</td><td>세부구분</td><td colspan="3">주요내용</td></tr>
<tr><td>발행회사 위험</td><td colspan="3">주식, 채권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td></tr>
<tr><td>주식가격 변동위험</td><td colspan="3">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적극적 매매 위험</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td></tr>
<tr><td>투자원금 손실 위험</td><td colspan="3">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매입방법</td><td colspan="2">•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환매방법</td><td>•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2">없음</td><td></td><td></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 rowspan="2">기준가</td><td>산정방법</td><td colspan="3">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td></tr>
<tr><td>공시장소</td><td colspan="3">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td></tr>
<tr><td>과세</td><td>구분</td><td colspan="3">과세의 주요내용</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2조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가 점차 낮아지는 다른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에 한합니다.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2)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3)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5) 이외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C) 수익증권 전환절차 및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칸서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077-50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consus.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5년 11월 13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6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6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6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6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보수체감	A-1, C-1, I-1, I2-1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투자	기관투자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www.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4614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461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485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515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560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674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BT355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469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1)	481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2)	495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3)	532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4)	63189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461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1)	471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2)	485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3)	499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4)	754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86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286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86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86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86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T2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T3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BT3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BT3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BT3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5196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T2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F)	CC66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을 합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모집(판매) 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등 영업점
다.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4614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461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485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515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560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674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BT355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469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1)	481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2)	495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3)	532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4)	63189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461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1)	471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2)	485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3)	499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4)	754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86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286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86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86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86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T2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T3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BT3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BT3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BT3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5196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T2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F)	CC66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04.10.13.	최초설정일

2004.12.27.	투자신탁 명칭변경일
2009.05.02.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주식투자신탁1호 →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10.02.12.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0.05.03.	판매보수인하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2010.10.25.	판매보수인하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2011.09.02.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2.08.17.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2.12.12.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3.12.09.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4.12.08.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5.12.10.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6.06.10.	투자설명서 개정(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16.07.04.	투자설명서 개정(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8.01.	투자설명서 개정(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
2016.12.12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7.05.19.	투자설명서 개정(부책임운용인력의 추가)
2017.07.18.	투자설명서 개정(클래스 추가신설)
2017.12.08.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18.07.23.	투자설명서 개정(클래스 추가신설)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19.11.26.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20.11.24.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펀드 명칭 변경
2021.03.25.	투자설명서 개정(투자위험등급 변경)
2021.06.08	투자설명서 개정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고난도 해당여부 반영)
2021.12.01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22.04.08	투자설명서 개정(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2.08.31	투자설명서 개정(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022.11.23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23.11.23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2024.10.31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투자전략 업데이트 등
2025.11.1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칸서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31 SK 증권빌딩 10 층 ☏ 02-2077-50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5.10.15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주요경력 사항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고재호	1978	책임 (상무)	18	1,551	39.84%	25.12%	39.84%	25.12%	14년 3개월	칸서스자산운용(주식운용본부) 유리자산운용 아데나투자자문 푸르덴셜투자증권

주1)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6개 펀드, 555억원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고재호	2018.11.21~현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운용전문인력

(2025.10.15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주요경력 사항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고재호	1978	책임 (상무)	18	1,551	39.84%	25.12%	39.84%	25.12%	14년 3개월	칸서스자산운용(주식운용본부) 유리자산운용 아데나투자자문 푸르덴셜투자증권

주1)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5개 펀드, 515억원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주1)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 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6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6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6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6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보수체감	A-1, C-1, I-1, I2-1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투자	기관투자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상기의 3단계 분류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성의 수익증권 종류로 구분됩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신탁계약서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온라인 가입자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납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1)	신탁계약서 제2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4)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납입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1)	신탁계약서 제2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신탁계약서 제26-1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퇴직연금 온라인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개인연금 온라인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매입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이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봄)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IFA(독립투자자문업자) 및 FA의 자문을 받거나 판매회사의 권유없이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F)	가. 법시행령 제 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나. 보험업법상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다.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 IFA(독립투자자문업: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속 자문업자와 달리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 상품추천, 체결대행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로서 그 자문을 받거나 판매회사의 권유없이 고객이 직접 가입하는 클래스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60% 이상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기본적인 섹터, 스타일의 적정비중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지향 - EPS(주당순이익)와 PER(주가수익비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강력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도섹터 비중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하여 알파 창출 - Buy&Hold 보다는 수익/위험 비율을 감안한 교체매매를 통한 알파 창출 ※ 상기 운용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등록일	2022년 8월 16일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 이상	신탁계약서 제 3 조 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유동성자산	10% 이하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초과 가능)	-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3.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 16 조 제 1 호부터 제 2 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 16 조 제 1 호부터 제 2 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나. 모집합투자기구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주식	60% 이상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합니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 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 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을 말합니다.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7.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10. 단기대출		법시행령 제345 조제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합니다.
11.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12.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 16 조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 16 조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6 조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 제17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신탁계약서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호 가목 및 제3호 본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증권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유예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간
계열회사 증권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칸서스하베스트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운용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기본적인 섹터, 스타일의 적정비중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지향
- EPS(주당순이익)와 PER(주가수익비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강력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도섹터 비중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하여 알파 창출
- Buy&Hold 보다는 수익/위험 비율을 감안한 교체매매를 통한 알파 창출

(2) 위험관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변경절차(수시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100% KOSPI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들의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입니다. 국내증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 지수는 국내증권시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내용
발행회사 위험	채권, 주식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변동 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도위험	채권, 주식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원금손실 위험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내용
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는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준가격오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35.51%**이며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60%이상 투자하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변경내역>

변경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2004.10.13. (최초설정)		1
2009.05.04	1	2
2011.09.02(위험등급 상향조정)	2	1
2016.07.04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적용)	1	3
2021.12.01(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적용)	3	2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구간>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 모형을 사용합니다.
※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신탁계약서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온라인 가입자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납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1)	신탁계약서 제2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4)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납입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1)	신탁계약서 제2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2)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신탁계약서 제26-1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퇴직연금 온라인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개인연금 온라인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매입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이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봄)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IFA(독립투자자문업자) 및 FA의 자문을 받거나 판매회사의 권유없이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F)	가. 법시행령 제 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나. 보험업법상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다.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 IFA(독립투자자문업: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속 자문업자와 달리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 상품추천, 체결대행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로서 그 자문을 받거나 판매회사의 권유없이 고객이 직접 가입하는 클래스입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u>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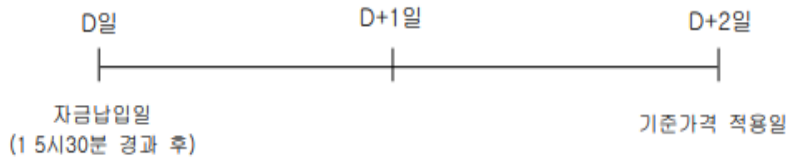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X)
-	-	O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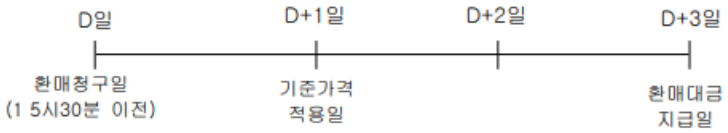

(나)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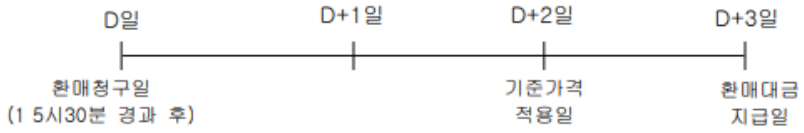

※ 판매회사가 해산.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 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법 제237조와 시행령 제258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①부터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259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2조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가 점차 낮아지는 다른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5.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I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후취-오프라인-보수체감(I-1), (I2-1)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6. 수수료후취-오프라인-보수체감(I-1), (I2-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후취-오프라인-보수체감(I-2), (I2-2)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7. 수수료후취-오프라인-보수체감(I-2), (I2-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후취-오프라인-보수체감(I-3), (I2-3)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8. 수수료후취-오프라인-보수체감(I-3), (I2-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수수료후취-오프라인-보수체감(I-4), (I2-4)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2) 상기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3) 상기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상기 '(1)'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자(F)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수익증권 전환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환매신청 클래스가 전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클래스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환매 청구된 클래스에서 환매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재간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가격)
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	-	-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	보유기간이 90 일 미만인 경우 환매금액의 0.2%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1)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2)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3)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4)	-	-	-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	보유기간이 90 일 미만인 경우 환매금액의 0.1%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1)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2)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3)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4)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50%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F)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판매수수료는 상기 정해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총보수(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654	0.900	0.030	0.016	1.6000	0.0036	1.6036	1.420	1.6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	0.654	0.800	0.030	0.016	1.5000	0.0036	1.5036		1.5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0.654	0.70	0.030	0.016	1.4000	0.0021	1.4021		1.4069	1.11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3)	0.654	0.500	0.030	0.016	1.2000	0.0036	1.2036		1.2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0.654	0.300	0.030	0.016	1.0000	0.0021	1.0021		1.0069	1.1171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0.654	0.200	0.030	0.016	0.9000	0.0021	0.9021	1.140	0.9069	0.8970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0.654	0.900	0.030	0.016	1.6000	0.0036	1.6036		1.6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1)	0.654	0.800	0.030	0.016	1.5000	0.0036	1.5036		1.5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2)	0.654	0.700	0.030	0.016	1.4000	0.0036	1.4036		1.4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3)	0.654	0.600	0.030	0.016	1.3000	0.0036	1.3036		1.3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4)	0.654	0.500	0.030	0.016	1.2000	0.0036	1.2036		1.2085	1.0947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0.654	0.300	0.030	0.016	1.0000	0.0036	1.0036		1.0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1)	0.654	0.250	0.030	0.016	0.9500	0.0036	0.9536		0.95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2)	0.654	0.200	0.030	0.016	0.9000	0.0036	0.9036		0.9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3)	0.654	0.150	0.030	0.016	0.8500	0.0036	0.8536		0.85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4)	0.654	0.100	0.030	0.016	0.8000	0.0036	0.8036		0.8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654	1.500	0.030	0.016	2.2000	0.0021	2.2021	1.600	2.2069	1.02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654	1.375	0.030	0.016	2.0750	0.0021	2.0771		2.0819	0.72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654	1.250	0.030	0.016	1.9500	0.0021	1.9521		1.9569	1.32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654	1.125	0.030	0.016	1.8250	0.003	1.8280		1.8329	0.97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654	1.000	0.030	0.016	1.7000	0.0036	1.7036		1.7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654	0.750	0.030	0.016	1.4500	0.0035	1.4535	1.180	1.4584	1.01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0.654	1.300	0.030	0.016	2.0000	0.0036	2.0036		2.0085	1.0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0.654	1.350	0.030	0.016	2.0500	0.0036	2.0536		2.0585	1.09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0.654	0.650	0.030	0.016	1.3500	0.0021	1.3521		1.3569	1.44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654	0.675	0.030	0.016	1.3750	0.0021	1.3771		1.3819	1.4932

개인연금(P1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0.654	0.000	0.030	0.016	0.7000	0.0036	0.7036		0.7085	1.094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654	0.500	0.030	0.016	1.2000	0.0037	1.2037		1.208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F)	0.654	0.030	0.030	0.016	0.7300	0.0036	0.7336		0.7385	1.0947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비용예시: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

구분(직전 회계기간발생내역)	금액(단위:천원)
증권 거래비용	408,079
금융비용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 별 예시> (단위:천원)

종류	구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2	433	612	998	2,146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262	434	614	1,001	2,1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1)~(A-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253	324	568	1,29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155	254	325	570	1,2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190	292	511	1,163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93	191	293	514	1,169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4	337	518	908	2,06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165	338	520	911	2,0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I-1)~(I-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274	389	682	1,55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155	275	391	685	1,558
수수료후취-오프라인-고액(I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211	324	568	1,29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103	212	326	571	1,3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I2-1)~(I2-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179	260	455	1,036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98	180	261	458	1,0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6	463	712	1,247	2,839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226	464	713	1,250	2,8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3	384	551	965	2,197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213	385	552	968	2,2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9	305	470	823	1,87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149	306	471	826	1,8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5	421	648	1,135	2,583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206	422	649	1,138	2,5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1	432	664	1,163	2,64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211	433	665	1,166	2,6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9	284	437	766	1,743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139	285	439	769	1,75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1	290	445	780	1,776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142	290	447	783	1,7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8	227	399	907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73	149	229	401	91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3	301	437	728	1,59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173	302	438	731	1,6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5	154	237	416	946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시	76	155	239	418	952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A, 종류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입금액의 1.0%, 0.50%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총보수・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 보수체감(CDSC) 클래스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클래스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 할 때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1)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2)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과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연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분리과세 선택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특별중도해지)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수령,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s://100lifepla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1 기 (2024.10.13 ~ 2025.10.12)	삼화회계법인	회계감사 완료 전
제 20 기 (2023.10.13 ~ 2024.10.12)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19 기 (2022.10.13 ~ 2023.10.12)	삼화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21기 (2025.10.12)	제20기 (2024.10.12)	제19기 (2023.10.12)
운용자산	44,363,485,107	37,872,656,133	37,932,138,495
증권	43,863,769,161	37,059,809,737	37,365,644,02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99,715,946	812,846,396	566,494,46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61,139,497	10,197,018	52,207,517
자산총계	45,124,624,604	37,882,853,151	37,984,346,01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01,614,229	10,664,900	55,140,408
부채총계	801,614,229	10,664,900	55,140,408
원본	18,206,015,179	21,600,571,996	23,455,802,637
수익조정금	-1,063,307,986	-499,148,878	-173,224,321
이익잉여금	27,180,303,182	16,770,765,133	14,646,627,288
자본총계	44,323,010,375	37,872,188,251	37,929,205,604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21기 (2024.10.13 ~ 2025.10.12)	제20기 (2023.10.13 ~ 2024.10.12)	제19기 (2022.10.13 ~ 2023.10.12)
운용수익	15,762,595,101	5,249,614,640	3,101,615,512
이자수익	15,764,337	14,954,059	18,089,218
배당수익	585,902,151	656,965,100	556,309,529
매매/평가차익(손)	15,160,928,613	4,577,695,481	2,527,216,765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722,510	-770,000	-770,000
당기순이익	15,757,872,591	5,248,844,640	3,100,845,512
매매회전율	331	354	328

주1)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형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2)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1기 0.2백만원, 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발생)
주5)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21기 0백만원, 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발생)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729,977	110,226.43	1,761,338	114,751.82	34,618.43	331.48	31.92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31,913.22	231.90	0.10	238,026.99	238.02	0.1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1,159.82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233,073.04	231.90	0.10	238,026.99	238.02	0.10

※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한 경우 제외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21기(2025.10.12)		제20기(2024.10.12)		제19기(2023.10.12)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499,715,946		812,846,396		566,494,469
1. 현금및현금성자산	499,715,946		812,846,396		566,494,469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43,863,769,161		37,059,809,737		37,365,644,026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43,863,769,161		37,059,809,737		37,365,644,026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761,139,497		10,197,018		52,207,51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760,802,019		9,400,155		51,651,887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337,478		796,863		555,630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45,124,624,604		37,882,853,151		37,984,346,012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801,614,229		10,664,900		55,140,40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800,844,229		9,894,900		54,370,408	
4. 수수료미지급금	770,000		770,000		770,000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801,614,229		10,664,900		55,140,408
자 본						
1. 원 본	18,206,015,179		21,600,571,996		23,455,802,63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1,063,307,986		-499,148,878		-173,224,321	
3. 이월잉여금	27,180,303,182		16,770,765,133		14,646,627,288	
발행좌수 당기: 18,206,015,179 좌	이익잉여금	27,180,303,182		16,770,765,133		14,646,627,288
전기: 21,600,571,996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23,455,802,637 좌)						
기준가격 당기: 2,434.53 원						
전기: 1,753.30 원						
전전기: 1,617.05 원)						
자 본 총 계		44,323,010,375		37,872,188,251		37,929,205,60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5,124,624,604		37,882,853,151		37,984,346,012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21기(2024.10.13 ~ 2025.10.12		제20기(2023.10.13 ~ 2024.10.12		제19기(2022.10.13 ~ 2023.10.12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601,666,488		671,919,159		574,398,747
1. 이 자 수 익	15,764,337		14,954,059		18,089,218	
2. 배당금수익	585,902,151		656,965,100		556,309,529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5,271,664,719		4,592,767,523		2,731,089,616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15,271,664,719		4,592,767,523		2,731,089,616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10,736,106		15,072,042		203,872,851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110,736,106		15,072,042		203,872,851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4,722,510		770,000		770,000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770,000		770,000		770,000	
6. 기타비용	3,952,51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5,757,872,591		5,248,844,640		3,100,845,512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1		0		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클래스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운용펀드	2024.10.13 ~ 2025.10.12	216.01	371.87	121.81	228.66	155.76	294.54	182.06	437.44
	2023.10.13 ~ 2024.10.12	234.56	375.32	122.54	214.04	141.09	247.48	216.01	371.87
	2022.10.13 ~ 2023.10.12	259.47	355.16	123.58	193.86	148.49	232.76	234.56	375.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2024.10.13 ~ 2025.1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3.10.13 ~ 2024.1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2.10.13 ~ 2023.1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2024.10.13 ~ 2025.10.12	0.09	0.15	0.00	0.00	0.00	0.00	0.09	0.22
	2023.10.13 ~ 2024.10.12	0.09	0.14	0.00	0.00	0.00	0.00	0.09	0.15
	2022.10.13 ~ 2023.10.12	0.09	0.12	0.00	0.00	0.00	0.00	0.09	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4.10.13 ~ 2025.10.12	1.10	1.53	1.10	1.80	2.10	3.53	0.10	0.19
	2023.10.13 ~ 2024.10.12	1.35	1.74	2.08	2.98	2.32	3.26	1.10	1.53
	2022.10.13 ~ 2023.10.12	2.58	2.88	2.52	3.23	3.75	4.79	1.35	1.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2024.10.13 ~ 2025.10.12	0.80	1.13	0.20	0.34	0.99	1.54	0.01	0.01
	2023.10.13 ~ 2024.10.12	1.99	2.61	0.96	1.37	2.14	2.96	0.80	1.13
	2022.10.13 ~ 2023.10.12	3.00	3.40	2.47	3.19	3.48	4.45	1.99	2.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024.10.13 ~ 2025.10.12	0.53	0.76	1.34	1.96	1.08	1.63	0.79	1.56
	2023.10.13 ~ 2024.10.12	2.82	3.76	1.54	2.11	3.83	5.49	0.53	0.76
	2022.10.13 ~ 2023.10.12	2.19	2.53	6.64	8.39	6.02	7.61	2.82	3.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024.10.13 ~ 2025.10.12	1.90	2.77	1.11	1.72	2.42	3.81	0.59	1.19
	2023.10.13 ~ 2024.10.12	0.83	1.12	3.80	5.46	2.73	4.06	1.90	2.77
	2022.10.13 ~ 2023.10.12	1.05	1.23	5.04	6.83	5.27	7.17	0.83	1.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024.10.13 ~ 2025.10.12	241.50	358.52	123.39	198.22	157.14	253.15	207.75	428.90
	2023.10.13 ~ 2024.10.12	255.40	351.97	120.78	180.86	134.69	201.94	241.50	358.52
	2022.10.13 ~ 2023.10.12	273.23	324.16	116.50	157.00	134.33	180.88	255.40	351.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4.10.13 ~ 2025.10.12	8.69	12.96	10.09	16.48	14.71	24.52	4.07	8.47
	2023.10.13 ~ 2024.10.12	12.23	16.89	11.70	17.05	15.24	22.95	8.69	12.96
	2022.10.13 ~ 2023.10.12	16.92	20.07	10.18	13.73	14.87	20.30	12.23	16.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2024.10.13 ~ 2025.10.12	0.01	0.01	0.02	0.02	0.02	0.02	0.01	0.02
	2023.10.13 ~ 2024.10.12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2022.10.13 ~ 2023.10.12	0.04	0.04	0.06	0.06	0.11	0.11	0.00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2024.10.13 ~ 2025.10.12	0.35	0.37	1.07	1.24	0.02	0.03	1.39	2.05
	2023.10.13 ~ 2024.10.12	0.26	0.26	0.19	0.20	0.11	0.12	0.35	0.37
	2022.10.13 ~ 2023.10.12	0.00	0.00	0.40	0.40	0.14	0.14	0.26	0.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2024.10.13 ~ 2025.10.12	0.00	0.00	0.02	0.03	0.01	0.01	0.02	0.03
	2023.10.13 ~ 2024.1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10.16~ 2025.10.15	2023.10.16~ 2025.10.15	2022.10.16~ 2025.10.15	2020.10.16~ 2025.10.15	2004.10.13~ 2025.10.15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9.67	25.05	22.23	14.71	10.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37.76	23.33	20.54	13.15	7.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38.30	23.82	21.02	13.57	6.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36.66	22.35	19.58	12.22	7.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36.86	22.51	19.74	12.36	4.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37.01	22.66	19.88	12.50	4.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37.18	22.81	20.03	12.64	4.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37.35	22.96	20.18	12.78	4.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37.69	23.27	20.48	13.06	9.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38.44	23.56	20.72		8.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37.82	23.39			19.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37.78				23.98
비교지수	38.88	22.03	18.24	9.15	7.14
수익률 변동성	18.52	17.99	16.87	17.59	19.58

주1) KOSPI*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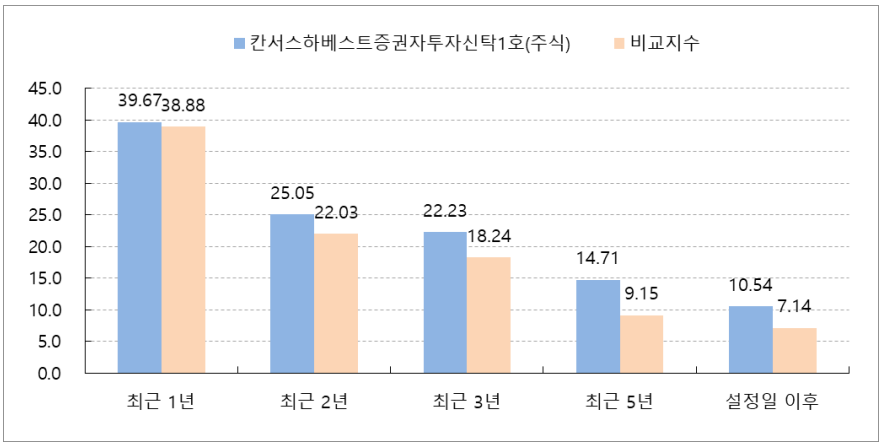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4.10.16~ 2025.10.15	2023.10.16~ 2024.10.15	2022.10.16~ 2023.10.15	2021.10.16~ 2022.10.15	2020.10.16~ 2021.10.15
칸서스하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9.67	11.97	16.76	-18.89	34.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2)	37.76	10.41	15.15	-20.03	32.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A-4)	38.30	10.86	15.61	-19.70	32.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36.66	9.54	14.24	-20.67	31.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36.86	9.67	14.38	-20.57	31.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37.01	9.81	14.52	-20.47	31.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37.18	9.94	14.67	-20.37	31.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37.35	10.08	14.81	-20.27	31.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37.69	10.36	15.09	-20.07	32.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38.44	10.28	15.24	-20.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37.82	10.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P1e)	37.78	11.55			
비교지수	38.88	7.22	11.01	-26.62	27.69

주1) KOSPI*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Class Ae : 최근 4년차 수익률은 11.64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주7) Class Pe: 최근 3년차 수익률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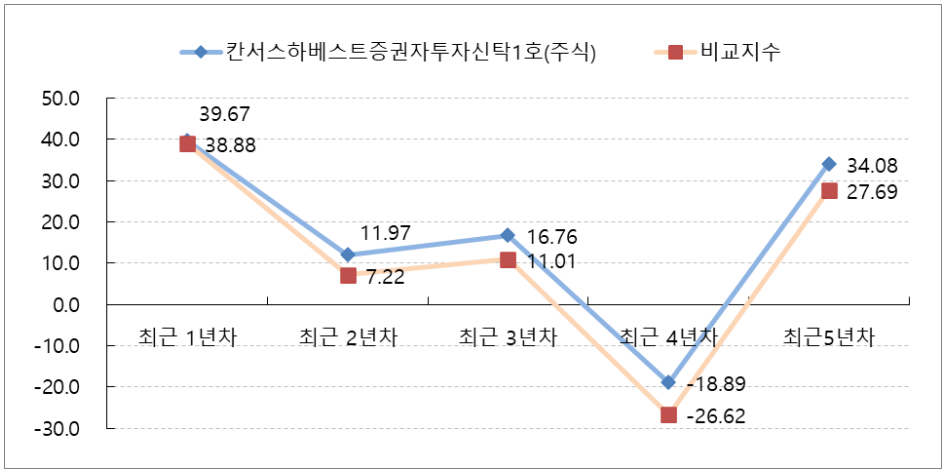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5.10.1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438.6	0.0	0.0	0.0	0.0	0.0	5.0	7.6	451.2
	(0.00)	(0.00)	(0.00)	(97.21)	(0.00)	(0.00)	(0.00)	(0.00)	(0.00)	(1.11)	(1.69)	(100.00)
KRW	0.0	0.0	0.0	438.6	0.0	0.0	0.0	0.0	0.0	5.0	7.6	451.2
	(0.00)	(0.00)	(0.00)	(97.21)	(0.00)	(0.00)	(0.00)	(0.00)	(0.00)	(1.11)	(1.69)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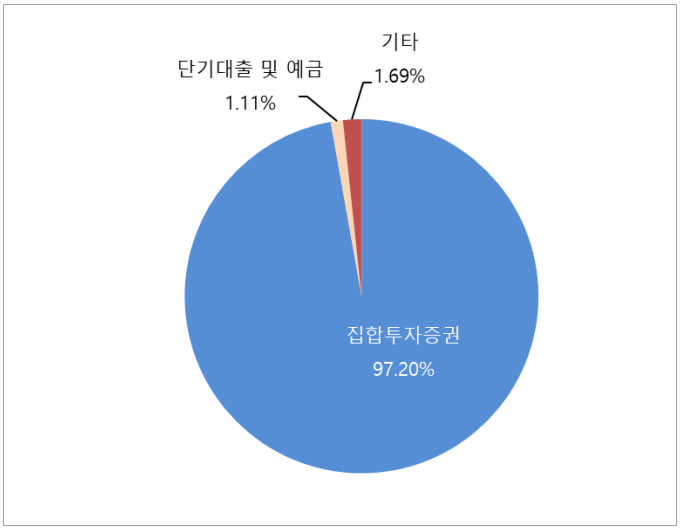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 현황

[2025.10.1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442.7	0.0	0.0	0.0	0.0	0.0	0.0	0.0	0.0	14.6	75.0	532.3
	(83.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74)	(14.10)	(100.00)
KRW	442.7	0.0	0.0	0.0	0.0	0.0	0.0	0.0	0.0	14.6	75.0	532.3
	(83.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74)	(14.10)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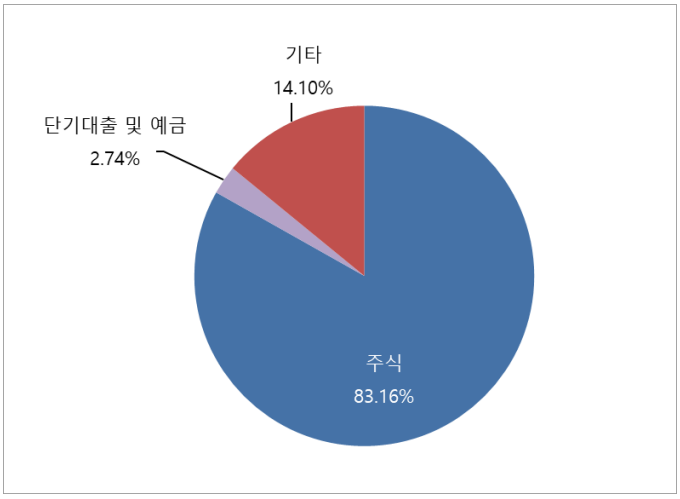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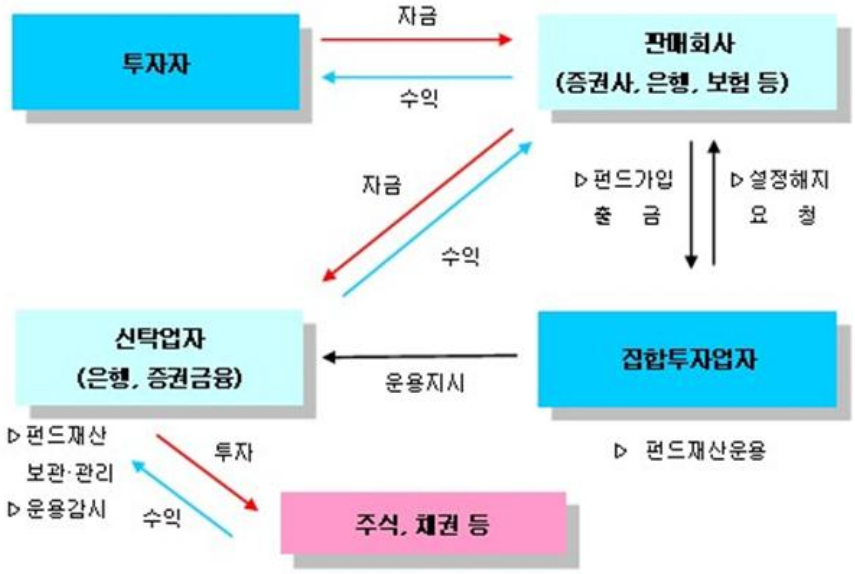

회사명	칸서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31 SK 증권빌딩 10 층 (☏ 02-2077-5000, www.consus.co.kr)
회사 연혁	2004.05.10 칸서스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설립 2004.07.09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사명변경 2004.09.10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4.10.07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7.01.31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운용사 주식형부문 수상 2009.02.04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2012.01.27 2011 더벨 주관 "Best M&A Seller/PE 부문" 수상 2015.10.26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7.12.31 우정사업본부 보험자산 운용 표창 2018.11.12 겸영업무 인가(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2019.10.11 최대주주변경(한일홀딩스 => 에이치엠지디엔씨)
자본금	268 억
주요주주현황	에이치엠디앤디, 험블비파트너스(주), 군인공제회, 하나증권, ㈜비에스산업, KDB 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우리사주조합, 소액주주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4.12.31'	'23.12.31'	항목	'24.12.31'	'23.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8,713	3,606	영업수익	18,934	13,6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69	11,660	영업비용	15,431	10,8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53	3,549	영업이익	3,503	2,75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744	3,451	영업외수익	53	64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150	14,000	영업외비용	1,595	1,999
상각후원가측정대여금 및 수취채권	2,148	3,076			
유형자산	719	1,160			
기타자산외	4,026	4,912			
자산총계	34,622	**45,414**			
차입부채	1,778	21,217			
기타부채외	7,313	8,271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961	1,398
부채총계	9,091	**29,488**			
자본금	26,796	16,796	법인세비용	584	-
자본잉여금	386	386			
기타자본구성요소	-2,665	-893	**당기순이익**	**1,377**	**1,398**
이익잉여금(결손금)	1,014	-363			
자본총계	25,531	**15,926**	-		-
부채와자본총계	34,622	**45,414**			

라. 운용자산규모(2025.10.15 현재 / 단위: 억원) (일임자산제외)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기관전용 사모펀드	합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재간접						
수탁고	722	1	1,132	6,151	1,023	8	4,370	30,052	949	17,496	61,90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신탁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1599-1111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ebhana.com

(2)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8.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 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2 층, 3 층 ☏ 02-3151-35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woorifs.co.kr

(2)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 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15-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 02-3215-14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 02-721-53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5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반대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이라 합니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함)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해당 운용기간"이라 함)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7조와는 별도로 다음의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대상금액: 신탁계약서 제37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③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집합투자규약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consus.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함)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한 경우에 한함)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table>
<tr><th>구분</th><th>중개회사의 선정기준</th></tr>
<tr><td>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td><td>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미나</th><th>탐방</th><th>정보 및 리서치</th><th>자료</th><th>주문체결능력</th><th>수수료</th><th>문제해결 및 기타</th><th>합계</th></tr>
<tr><td>항목가중치</td><td>20%</td><td>10%</td><td>30%</td><td>10%</td><td>15%</td><td>5%</td><td>1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각각 1~5 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등급구분은 상위 합산점수기준으로 A~C 등급은 각각 4 개사로 하며, 나머지는 D 등급
*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A(36%이상), B(28%), C(12%), D(24%이하)를 원칙으로 함
</td></tr>
<tr><td>채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td><td>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미나</th><th>보고서</th><th>거래체결능력</th><th>거래용이성</th><th>시장판단 대처능력</th><th>기타서비스</th><th>합계</th></tr>
<tr><td>배점</td><td>20%</td><td>15%</td><td>20%</td><td>15%</td><td>15%</td><td>15%</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0~평가항목별 배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합산기준 기준으로 상위 10 개사를 채권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
* 합산점수 기준으로 상위 2 개사를 채권관련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
</td></tr>
</table>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헷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